

#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조주홍 의원 외 24명)



#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조주홍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44 |
|----------|-----|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조주홍·오세혁·안희영·  
배진석·김희수·황병직·  
최병준·박승직·박영환·  
박차양·박창석·박채아·  
박태준·박관수·신효광·  
이선희·이재도·이종열·  
곽경호·홍정근·정세현·  
김종영·이수경·김봉교·  
임미애 의원 (25명)

### 1. 제정이유

- 고부가가치 산업인 요트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임. 특히,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요트인구 조성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도내 요트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해양레저 저변확대와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요트, 요트산업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라.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요트교육,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마. 요트경기대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규정(안 제6조)
- 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 제7조)

### 3. 조 례 안 : 붙임참조

### 4. 관련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 「항만법」 제2조
- 「어촌·어항법」 제2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5. 관련부서 협의

-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 6. 참고사항

- 발의의원 서명부

##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해양 레저 저변 확대와 해양관광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항해·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 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트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요트산업 육성시책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요트 교육·강좌나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트 교육·강좌 및 요트클럽 육성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할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요트학교, 도내 대학의 평생교육원 또는 요트 관련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요트경기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도의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세계적인 요트경기대회·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요트학교 또는 요트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의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요트기반시설 등의 조성
2. 요트학교 설치·운영
3. 요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제6조에 따른 요트경기대회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요트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 오락 · 체육 ·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 □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2. 22., 2012. 12. 18., 2013. 3. 23., 2014. 3. 24.>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 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기본시설

- (1) 항로·정박지·선유장(船留場)·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 나. 기능시설

-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 시설
-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 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 판매시설

-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선박보급시설
- (6) 항만의 관제(管制) · 정보통신 · 홍보 · 보안에 관련된 시설
- (7) 항만시설용 부지
- (8) 「어촌 · 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어촌 · 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10) 방음벽 · 방진망(防塵網) ·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 다. 지원시설

-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 · 판매 ·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3)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을 위한 시설
-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 · 숙박시설  
· 진료소 · 위락시설 · 연수장 · 주차장 · 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  
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  
시설
- (7)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  
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주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

## □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2012. 10. 22., 2013. 3. 23., 2014. 3. 24., 2015. 6. 22., 2017. 11. 28.>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둑·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 · 정박지 · 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 나. 기능시설

1) 철도 · 도로 · 다리 · 주차장 · 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 · 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 · 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 · 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 · 어구 보전시설

4) 급수(給水) · 급빙(給氷) · 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 · 선수품 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 · 수산물위판장 · 수산물직매장 · 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 · 판매 · 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製氷) · 냉동 · 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 · 가공 시설

7) 육상 무선전신 · 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 · 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 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 · 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 · 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 · 복지회관 ·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 · 도서관 · 학습관 · 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 · 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 · 낚시어선 · 모터보트 · 요트 ·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5) 지역특산물 판매장, 생선횃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 6) 숙박시설 · 목욕시설 · 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 □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 개발절차에 따른다.

#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자 치 법 규 명   |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 평 가 담 당     | 감사관실                                                                                       | 직 급 성 명       | 행정7급 김 덕 환    |
| 입 안 주 무 부 서 | 동해안정책과                                                                                     | 통 보 ( 조 치 ) 일 | 2018. 11. 23. |
| 관 련 조 문     | 검 토 결 과                                                                                    |               | 조 치 사 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 요인 없음.</li> </ul> |               |               |

##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해당 여부 | 응답내용      | 첨부사항  |
|------|----------------|-------|-----------|-------|
| 준수   | 준수부담의 적정성      | X     | ① 적정      | 해당없음  |
|      |                |       | ② 높음      |       |
|      | 제재규정의 적정성      | X     | ① 적당      | 해당없음  |
|      |                |       | ② 약함      |       |
|      |                |       | ③ 강함      |       |
|      | 특혜발생 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집행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X     | ① 구체적·객관적 | 해당없음  |
|      |                |       | ② 추상적·주관적 |       |
|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X     | ① 적정      | 해당없음  |
|      |                |       | ② 부적정     |       |
|      | 재정누수 가능성       | X     | ① 명확      | 해당없음  |
|      |                |       | ② 불명확     |       |
|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 X     | ① 있음      | 해당없음  |
|      |                |       | ② 없음      |       |
|      | 공 개 성          | X     | ① 예측가능    | 해당없음. |
|      |                |       | ② 예측곤란    |       |
|      | 예측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부패통제 | 이해충돌 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 조례명 :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실·과    | 주요내용(조항)                                   | 검 토 의 견 |
|--------|--------------------------------------------|---------|
| 동해안정책과 |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br>도지사의 책무(제3조)                | 의견없음    |
|        |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br>육성계획의 수립·시<br>행(제4조)        | 의견없음    |
|        | 요트인구의 저변확대를<br>위하여 교육(제5조)                 | 의견없음    |
|        |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br>도 향상을 위한 요트<br>경기대회 개최(제6조) | 의견없음    |
|        | 요트산업 육성을 위<br>한 재정 지원(제7조)                 | 의견없음    |

#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교육), 제6조(요트경기대회 개최 등), 제7조(재정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에 따른 비용소요가 예상됨

### 2. 비용추계의 전제

- 요트산업 육성 활성화(요트학교 운영, 요트경기대회 개최 등)를 위해 도비 30%, 시군비 70%를 전제로 함

### 3. 비용추계의 결과(단위 : 백만원)

| 연도<br>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세출          | 요트학교 운영   | -    | 150  | 150  | 150  | 150  | 600    |
|             | 요트경기대회 개최 | -    | 100  | 100  | 100  | 100  | 400    |
|             | 소계(b)     | -    | 250  | 250  | 250  | 250  | 1,000  |
| □ 총 비용(a-b) |           | -    | -250 | -250 | -250 | -250 | -1,000 |

### 4. 재원조달 방안

- 동 조례는 약 1,000백만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추계되며, 도 자체재원으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br>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도비       | 일반회계   | -    | 250  | 250  | 250  | 250  | 1,000 |
|          | ○○특별회계 |      |      |      |      |      |       |
|          | ○○기금   |      |      |      |      |      |       |
| 시·군비     |        | -    | 584  | 584  | 584  | 584  | 2,336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    | 834  | 834  | 834  | 834  | 3,336 |

## 5. 부대의견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국비를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6. 작성자

- 동해안정책과 지방해양수산서기 박정호 (7624)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 가. 대 상

- 제5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요트 교육·강좌나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요트경기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도의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세계적인 요트경기대회·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의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나. 비용추계 방법

- 코리안컵 독도일주 국제요트대회 개최 : 도 분담율 : 30%
- 2018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2018년 예산현황 |    |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계                     | 362        | -  | 90 | 410  |
| ○ 코리안컵 독도일주 국제요트대회 개최 | 162        | -  | 90 | 210  |
| ○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         | 200        | -  | -  | 200  |

## 2. 비용추계시 중점 고려사항

- 2018년 경상북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제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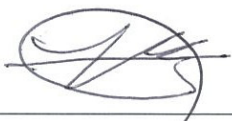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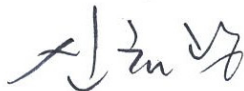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의원명 | 서명  | 비고 |
|-----|-----|----|
| 조극홍 | 조극홍 |    |
| 구미현 | 구미현 |    |
| 안희영 | 안희영 |    |
| 배진석 | 배진석 |    |
| 김희우 | 김희우 |    |
| 황병각 | 황병각 |    |
| 최병갑 | 최병갑 |    |
| 백명지 | 백명지 |    |
| 박영환 | 박영환 |    |
| 백미리 | 백미리 |    |
| 백광석 | 백광석 |    |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의원명   | 서명                                                                                   | 비고 |
|-------|--------------------------------------------------------------------------------------|----|
| 박 래 아 |     |    |
| 박 세 린 |     |    |
| 박 판 부 |     |    |
| 신 훈 광 |    |    |
| 이 전 희 |   |    |
| 이 재 도 |  |    |
| 이 종 열 |   |    |
| 박 성 호 |  |    |
| 홍 정 근 |   |    |
| 정 세 현 |   |    |
| 김 종 영 |   |    |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의원명   | 서명    | 비고 |
|-------|-------|----|
| 이 수 경 | 이 수 경 |    |
| 김 용 근 | 김 용 근 |    |
| 안 미 애 | 안 미 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